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윤준병·임호선·강준현
이병진·서삼석·박 정
임미애·김 윤·문대림
임오경·이용우·전종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어업·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·환경·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, 현행법은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(안 제3조).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3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제3조제3항제2호 후단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

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3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35명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<후단 신설>	2. ----- ----- . 이 경우 다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가. · 나. (생 략) <신 설>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